外氣圈 宇宙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委員會(COPUOS)를 中心으로 한 最近 宇宙法 論議動向*

張 東 熙**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Ⅱ. COPUOS 內에서의 宇宙法 論議動向
1. COPUOS 法律小委의 主要 議題 및 採擇過程
2. 外氣圈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問題
3.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의 法的 問題
4. 地球停止軌道의 性格 및 使用問題
5. 宇宙利用 惠澤問題
6. 其他 問題
Ⅲ. 向後 展望과 우리나라의 對應方法

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57년 소련의 sputnik 衛星 發射를 계기로 시작된 인류의 宇宙活動은 國家間의 境界를 넘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航空·運送·通信 등 우리의 주변생활에 이미 막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宇宙는 아직도 무한한 開發과 探査의 對象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人類에게는 希望과 꿈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外氣圈 宇宙가 人間生活의 모든 측면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國家間의 安保·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도 점차 그 이해관계가 커짐에 따라

---

* 본고는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필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

** 外務部 條約局 國際協約課長

宇宙活動을 規制하고 秩序를 부여하는 規範體制의 必要性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宇宙의 平和的 利用을 强化하고 그 탐사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율하여 새로운 秩序와 規範을 創出하는 장이 1959년 유엔 결의 1472(XIV)호에 따라 유엔총회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外氣圈 宇宙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委員會(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COPUOS)이다.

UN은 COPUOS의 설립시 ① 外氣圈의 平和的 利用과 關聯된 유엔과 그 專門機構, 기타 國際機構의 資源과 活動 심의 ② 유엔 후원하에 必要한 分野에서 國際協力과 프로그램의 개발 ③ 유엔을 기본틀로 하여 外氣圈 分野에서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한 조직정비 ④ 外氣圈 探査時 發生할 수 있는 法的 問題를 討議하고 宇宙關聯 情報의 交換,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의 調整·支援 등을 그 임무로 부여하였다.[1] 그 결과 COPUOS를 중심으로 5개 우주관련 條約[2]과 5개 主要 原則[3]이 樹立되었고 이를 기초로 通信, 資源探査, 氣象 觀測, 災難弘報 등의 분야에서 外氣圈 宇宙를 活用하기 위한 다양한 國際協力 프로그램을 開發·推進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관련 條約·原則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주가 제한된 天然資源으로서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오로지 平和的 目的으로만 활용된다는 國際法原則의 確立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국가의 우주활동은 國際的 協力보다는 個別的인 몇몇 국가 중심으로 活動이 전개되고 있고, 다른 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能力의 差異가 심하여 宇宙活用 惠澤을 향유하지 못하는 國家들의 不滿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국의 安保·經濟·社會·文化的 側面에서 점차 宇宙 利用 欲求와 需要가 增大됨에 따라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격차가 더욱 커져 새로운 국가간의 不平等을 조장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國際社會에서 浮刻되고 있다.

---

1) Spac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1992, p.1.

2) 우주관련 5개 조약으로는 ①1967 우주조약, ②1968 구조협정, ③1972 국제책임협약, ④1975 등록협약, ⑤1979 달조약이 있다.

3)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4개 주요원칙으로는 ①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법적원칙의 선언, ②국제 T.V. 직접방송용 지구인공위성에 대한 국가의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 ③우주로부터의 지구에 대한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외기권에서의 핵물질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류의 宇宙活動이 불과 수십년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地球停止軌道 利用問題, 他國 資源探査, 情報의 自由 流通과 制限, 宇宙 利用惠澤의 分配問題 등 具體的인 問題에 대해 조정하고 통제할 만한 國際組織體制가 設立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國際的인 慣例(관례)도 아직 形成段階에 있으며, 成文化된 規範體制 또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宇宙活用 科學技術의 發展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秩序確立은 국가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되어 法的 空白狀態를 招來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國際的 現實을 감안, 宇宙法관련 주요의제에 대하여 COPUOS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內容과 各國의 立場을 살펴보고, 이제 막 宇宙活用時代에 進入한 우리나라가 우주활동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이들 宇宙法관련 問題들에 대한 立場 定立 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COPUOS內에서의 宇宙法 論議動向

1. COPUOS 法律小委의 主要 議題 및 採擇過程

가. 採擇過程

COPUOS는 그 산하에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宇宙法 관련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률소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3.18.-31.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COPUOS 제35차 법률소위원회의 主要議題를 살펴보면 外氣圈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 地球停止軌道의 性格 및 利用 문제,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의 法的 側面에 관한 說問書 檢討, 宇宙利用惠澤의 分配問題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COPUOS 설립이래 宇宙 定義問題와 같이 지속적으로 檢討되어온 것도 있으나 宇宙廢棄物(space debris) 문제처럼 최근에 새로운 의제로의 採擇與否를 놓고 論亂이 되고 있는 問題도 있는 바, COPUOS 法律小委에서는 이들 의제에 대한 非公式協議를 갖고 기존의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討議를 進行한다. 이때 제안국은 자국이 제안한 추가의제에 대해 議題採擇 必要性, 法的 問題點 등을 Non-Paper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非公式協議를 거쳐 討議된 內容은 법률소위 報告書 形式으로 外氣圈 平和的 利用委員會에 報告되고, 이는 다시

유엔총회에 보고되며 총회가 委員會의 報告를 檢討한 후 追加議題 채택여부를 결의하게 된다.

이렇게 採擇된 議題는 법률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檢討된 후 consensus가 형성될 경우 유엔총회 決議草案 형식(원칙의 경우) 또는 協約 草案文으로 법률소위에서 作成되어 委員會와 UN총회에 報告되며, 총회가 결의안 혹은 협약 책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主要議題

최근 COPUOS 법률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宇宙法관련 主要議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가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969년이래 COPUOS의 의제가 되어오고 있지만, 냉전기에는 미국·소련 및 77그룹을 중심으로 한 開途國間의 意見 對立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冷戰體制가 와해된 최근에는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對立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의 일환으로 討議되고 있는 地球停止軌道 問題가 있다. 지구정지궤도 문제는 지난 1993년 콜롬비아가 유엔총회 결의 草案 形式으로 마련한 시안[4]을 제출하여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구정지궤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國際電氣通信聯合(ITU)의 역할문제 등을 이유로 美國이 이 問題를 COPUOS에서 논의하는데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에 대한 直接的인 接近을 回避하고 이에 대한 各國의 意見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러시아가 제출한 '航空宇宙物體의 法的 問題에 관한 說問書'에[5] 관한 문제가 있다. 이 설문서는 93-94년에 법률소위의 수정검토를 거쳐 지난 1995년 外氣圈 事務局이 COPUOS 委員國에 書面으로 答辯書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96년 제35차 법률소위까지 答辯書를 제출한 國家는 우리나라·러시아·독일 등을 포함하여 9개국이다.

넷째, 지난 1992년 유엔總會 決議 47/68을 통해 採擇된 '宇宙에서의 核原料物質 使用에 관한 原則' 再檢討 問題가 있다. 이 문제는 원칙 채택후 2년

4) UN.DOC.A/AC.105/C.2/L.192, 30 Mar. 1993.
5) UN.DOC.A/AC.105/C.2/L.189, 29 Mar. 1992.

내에 再檢討토록 되어 있는 동 원칙 11에 따라 법률소위 의제로 되었는데, 宇宙에서의 核燃料物質의 使用內譯, 危險性 등에 대한 科學·技術的 檢討를 위해 법률소위에서 토의를 중단하고 COPUOS 과기소위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다섯째, 宇宙利用惠澤의 分配 問題가 있다. 1967년 宇宙條約은 명칭 그대로 宇宙에 관한 原則條約으로 國內法과 비교해 보면 宇宙分野에 관한 憲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주활동 분야별로 國際的 履行에 관한 規範化가 요청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동 條約 第1條의 이행과 관련된 宇宙利用惠澤 문제는 公平原則에 입각, 開發途上國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주장하는 開途國과 宇宙活動의 自由를 주장하는 先進國간의 立場이 첨예하게 對立되고 있는 분야다.

여섯째, 아직 COPUOS의 법률소위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宇宙廢棄物 問題(우주환경문제) 및 宇宙의 商業的 利用問題(지적재산권 문제 등)가 있다. 지난 3월초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中國의 동방홍 3호 위성이 우리나라 무궁화호 위성근처로 이동해와 충돌위험을 야기한 사례와 같이[6] 宇宙廢棄物(space debris) 문제는 각국의 宇宙活動이 活性化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國家間의 分爭을 야기할 소지가 큰 분야이므로 조만간 國際責任 問題, 賠償問題, 除去問題 등의 해결을 위한 規範化 問題가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체코 및 칠레는 금년 제35차 법률소위에서 COPUOS 법률소위 추가의제로 우주폐기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 外氣圈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問題

이 문제는 67년이래 매년 유엔총회 決議를 통해 COPUOS 法律小委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오고 있으나 各國의 意見이 좀처럼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에 관한 이론이 30여가지가 넘을 정도로[7]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COPUOS 법률소위에서 제기되는 주

6) 중앙일보, 1995.11.30. 1면.

7) 일반적으로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은 크게 기능적 방법과 공간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지나 각 접근방법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수십가지로 나누어진다.

요의견을 보면, 첫째, 外氣圈 宇宙의 利用 및 開發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國際的 協力이 필수적이며 또한 外氣圈 宇宙가 人類의 유한한 天然資源으로서 그 이용혜택이 모든 국가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77그룹을 중심으로한 開途國 意見이 있다. 둘째, 美國이 中心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宇宙의 定義 및 境界를 劃定할 必要性이 確立되어 있지 않으며, 성급하게 宇宙에 대한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宇宙活動마저 위축시키게 되고 境界劃定에 따른 管轄權 主張으로 國際的인 紛爭素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셋째, 지난 30여년간의 논의를 토대로 機能的 接近法과 空間的 接近法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능적 접근법은 大氣圈과 外氣圈을 物理的 기준에 따라 區分할 것이 아니라 비행선(craft : 항공기 또는 우주물체)의 기능, 즉 지구상의 두지점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航空法을 適用하고, 地球에서 宇宙의 한지점을 飛行하는 경우 宇宙法을 適用하자는 이론이다.[8] 空間的 接近法은 지구상공의 일정고도를 大氣圈(airspace)과 外氣圈(outer space)으로 區分하자는 것으로 그 일정 高度를 정하는 基準으로 공기(air)의 존재여부 및 항공기의 飛行可能高度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론이다.[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는 아직까지 그 定義 및 境界劃定의 必要性에 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膠着狀態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 地球停止軌道 등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그 法的問題를 檢討함으로써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를 解決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의 法的問題

가. 議題採擇背景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에 관한 法的問題가 COPUOS에 제기된 背景은 미국이나 구소련이 발사한 宇宙往復船이 발사시에는 로켓의 推進力에

8) Nicholas Grie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Airspace of the High Seas, London, 1994, pp.41-42.

9) Ibid, p.42.

의하지만 귀환시에는 기존항공기의 특성을 이용함으로 인해 宇宙法과 航空法중 어느법을 適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宇宙往復船이 기존 우주조약상의 宇宙物體(space object)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問題와 지구귀한시 글라이더 비행을 함으로써 타국 領空通過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航空宇宙物體에 대한 法的 問題를 檢討할 경우 必然的으로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의 解決에 유용한 指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宇宙法과 航空法 體制 문제의 解決에도 寄與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가 COPUOS 위원국의 사전(preliminary)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규범 정립에 참고키 위해 마련한 것이 '航空宇宙物體의 法的問題에 관한 說問書(Questionnaire on possible legal issues with regard to aerospace objects)'이다.

이 說問書는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93 및 94년 COPUOS 법률소위에서 최종 수정을 거쳐 사무국이 각국에 의견을 조회하였는 바,[10] 금번 법률소위에서 答辯書를 제출한 國家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 독일, 칠레, 파키스탄, 이태리, 체코, 멕시코, 필리핀 등 9개국이다.

나.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에 관한 法的問題 說問調査[11]

外氣圈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에 대한 接近方法의 하나로 제기된 航空宇宙物體에 관한 法的問題 檢討說問의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우주물체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항공우주물체를 '일정기간동안 大氣圈 飛行을 위해 空氣力學的 特性을 이용할 수 있으며 外氣圈을 항행할 수 있는 物體'로 정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一定期間동안(for a certain period of time)'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므로 보다 明確하게 表現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였으며, 독일은 기존의 法律文書나 國際法規定 어디에도 이와 같은 정의(용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宇宙法에서 "宇宙船(spacecraft)"과 "宇宙物體(space object)"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미국의 Space Shuttle, 구소련의 Space Shuttle Buran, 또는 현재 계획중인 유럽우주기구(ESA)의 HERMES, 영국

10) UN.DOC A/AC. 105/607, 19 Apr. 1995.
11) UN.DOC. A/AC, 105/635; Add 1; Add 2, 15 Feb. 1996.

의 HOTO, 일본의 HOPE, 독일의 SÄNGER, 미국의 NASP와 같은 우주왕복선도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 "宇宙輸送體系(space transportation system)"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航空宇宙物體(aerospace object)라는 용어대신 "宇宙輸送體系(space transportation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航空宇宙物體에 대한 適用法體制 問題이다. 즉 航空宇宙物體의 위치에 따라 적용할 規範體制(航空法 또는 宇宙法)를 달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機能的 接近法과 空間的 接近法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이며 航空宇宙物體와 관련하여 현행 航空法과 宇宙法의 關係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한 各國의 立場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機能的 接近法에 입각하여 航空宇宙物體의 飛行目的에 따라 宇宙法이 適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空間的 接近法을 취하여 大氣圈에서는 航空法이 外氣圈에서는 宇宙法이 適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은 나라는 현재 운영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宇宙輸送體系(space transportation system)'가 우주조약 1-3조상의 外氣圈 宇宙의 利用과 探査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宇宙法 體制가 適用되고, 이의 運用時 非行中 衝突問題 즉 航空安全 등을 위해 航空法體系(특히 항공교통관계)가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航空法과 宇宙法이 모두 適用될 수 있다는 意見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航空宇宙物體가 다른 國家의 領空(대기권)에 있는 경우의 適用法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체코, 이라크, 멕시코, 필리핀 등은 航空安全 및 安保問題 등의 차원에서 航空關係 國內·國際法이 適用된다는 立場을 제시하였으며, 러시아는 航空宇宙物體가 飛行時 항공법상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地球 對 地球(earth-to-earth), 地球 對 軌道(earth-to-orbit) 飛行을 區分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地球 對 軌道 飛行의 境遇 地球軌道로의 進入과 歸還 飛行時 他國領空의 平和的(무해)通過 問題를 條約形態로 規範化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航空宇宙物體의 特性(기능, 공기역학 이용, 디자인 형태)을 고려한 特別制度(규범)의 存在與否와 通行(passage)과 관련된 선례 또는 國際慣習

法 存在與否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說問書 答辯國家가 航空宇宙物體의 機能的 特性, 空氣力學的 特性, 디자인 형태를 고려한 特別制度(규범)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單一化된 法體制의 必要性을 제기하였으나, 이태리는 현단계에서 특별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航空宇宙物體의 通行(passage)과 관련된 國際 慣習法 또는 관례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독일 등은 문제가 되고 있는 航空宇宙物體의 大氣圈 再進入후 통행에 관한 先例 또는 國際慣習法의 存在에 대하여 否定的 의견을 제시하였고, 러시아는 비록 선례가 적기는 하지만 있다고 보고 그예로 1990년 미국이 Atlantis 多目的 衛星의 비행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國際慣習法이 形成中이라는 意見을 제시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航空宇宙物體의 通行과 관련된 예로 墜落(falling)을 예로 들고 있으나 墜落을 通行(passage) 槪念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넷째, 宇宙物體(space object)의 通行(passage)에 관한 國內法 혹은 國際法 規範의 存在與否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독일은 독일연방 航空規定(Federal German Aviation Code)의 제1조2항에 宇宙船, 로켓 및 그와 유사한 飛行物體는 大氣圈에 있는한 航空機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연방 宇宙活動法(The Russian Federation Act on Space Activity) 제9조에 어느 국가가 그 飛行位置·經路 등에 관한 충분한 情報를 사전에 提供한 경우, 그 국가의 우주물체는 러시아연방 영공에서 무해비행(a single innocent flight)를 할 수 있다고 하는 國內法 規定의 例를 提示하였다.

끝으로, 宇宙物體(space object)의 通行에 관한 國際法 規範 問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宇宙物體의 登錄·損害賠償, 回收 등을 규정한 條約 규정들이 航空宇宙物體에도 適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데 반해, 이라크는 宇宙物體와 航空宇宙物體 모두에 適用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地球大氣圈 진입후의 宇宙物體의 通行問題가 宇宙關聯 國際條約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國際責任, 宇宙飛行士 救助, 宇宙物體 返還規程 등의 個別的 條項들이 適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宇宙物體의 通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國際規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고 있다.

다. 討議 結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航空宇宙物體와 관련된 法的問題는 宇宙의 定義 및 境界劃定 問題, 航空法과 宇宙法體制의 問題, 先例 또는 慣習法 形成問題, 國內·國際法 規範의 存在與否, 새로운 規範體制의 必要性 등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各國의 立場 역시 開途國이냐, 先進國이냐, 宇宙開發 經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航空宇宙物體에 대한 說問書 方式이 各國의 宇宙法에 관한 현재의 立場을 COPUOS를 통해 표출케 함으로써 향후 이를 토대로 各國의 立場을 調整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데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는 법률소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說問에 答辯書를 提出한 國家가 10개국에 불과하고 향후 더 많은 國家들의 意見이 提出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討議를 進行할 수 있다고 본다.

4. 地球停止軌道의 性格 및 使用問題

가. 地球停止軌道 特性 및 問題點

地球停止軌道란 人工衛星이 지구적도 주변의 약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의 생기는 幾何學的 軌迹(geometric locus)를 말한다.[12] 따라서 地球停止軌道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物理的인 실체가 아니라 人工衛星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geostationary orbit라는 용어보다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지구정지궤도에 관한 콜롬비아 시안)라는 용어가 선호되기도 한다.

地球停止軌道 문제가 國際法的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宇宙條約上 宇宙의 一部分으로서 국가의 衛星放送·通信에 필수적인 要素일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的 限界 문제로 인해 지구상공에 일정수의 인공위성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ITU協約 제44조에서 地球停止軌道가 제한된 天然資源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地球停止軌道의 物理的 特性과 이를 利用할 수 있는 科學技術的 限界때문이다. 또한 地球停止軌道上의 衛

12) UN.DOC. A/AC.105/C.2/L.192, 30 Mar. 1993 ; 기존의 궤도(orbit)가 마치 지구 상부에 존재하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반해, 콜롬비아가 지구정지궤도에 관한 Working Paper에서 제시한 이 개념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그 범위와 폭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星 하나로 지구표면의 1/3과 무선신호를 送受信할 수 있고 지구상의 관점에서 항상 동일한(geosynchronous) 위치에 있기 때문에 衛星을 活用하여 通信·TV放映 등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地球停止軌道 衛星을 利用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國際法 體制上 地球停止軌道는 유한한 天然資源이며 그 이용문제는 國際電氣通信聯合(ITU)이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國際規範의 確立問題를 놓고 先進國과 開途國의 주장이 첨예한 對立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정지궤도가 ITU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된 天然資源이나 經濟的 活用價値의 增大로 各國의 이에 대한 需要가 폭발적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구정지궤도의 重要性이 國際的으로 認識됨에 따라 開途國中 赤道國家들이 지구정지궤도가 특성상 적도부근 상공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착안 領空主權을 근거로 이에 대한 管轄權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67년 宇宙條約 제1조에 따르면 지구정지궤도는 宇宙의 一部分으로서 그 探査와 利用은 國家의 經濟的 또는 科學的 發展程度에 관계없이 모든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領域(province of all mankind)을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정지궤도를 活用하고 있는 國家는 大部分이 主要先進國들이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정지궤도에 접근조차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넷째, 비록 ITU協約 體制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구정지궤도가 'first-come, first-served' 慣行에 의해 配分되었기 때문에 技術과 經濟的 能力이 있는 先進國과 그렇지 못한 여타 국가 사이에 공평한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TU에 의해 各國에 分配된 地球停止軌道 또는 電波周波數는 전체의 1%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利用·開發能力이 있는 國家가 먼저 차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1993년 開途國이면서 赤道國家인 콜롬비아가 지구정지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PUOS 법률소위에 제출한 유엔총회 결의 초안을 놓고 토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여기서 그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地球停止軌道 問題에 관한 Colombia 試案

콜롬비아는 지난 1993년 COPUOS 제32차 법률소위에 Working Paper로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유엔총회 決議 試案을 제출하였으며[13] 금년 제35차 법률소위에서는 93년 시안에 대한 토의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 바,[14]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3년 콜롬비아 Working Paper의 主要內容과 主要爭點

콜롬비아 Working Pape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地球停止衛星軌道는 다른 衛星軌道와 달리 地球에서 보아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幾何學的 軌迹(geometric locus)으로 제한된 天然資源(limited natural resources)이며 관련 國際通信條約에 따라 開途國의 特別利益을 고려해 모든 人類에게 惠澤이 되는 合理的이고 公平한 방법으로 使用되어야 한다(전문).

둘째, 지구정지위성궤도가 合理的·效果的·經濟的 및 공평한 방법으로 使用되도록 지구정지궤도에 관한 特別 및 補充的 法體制가 成立되어야 한다(제1항).

셋째, 모든 국가에 의한 公平한 접근의 보장은 優先權(preferential rights)의 설정으로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구정지궤도에의 접근시 다음의 基準을 適用한다(제3항).

- 동일 궤도위치(orbital position)에 대하여 先進國과 開途國의 接近權 주장이 競合하는 경우 또는 여타 다른 궤도 旣確保國과 未確保國間에 接近權 주장이 競合하는 경우에는 각각 開途國과 未確保國에 優先權 부여
- 2개국 이상의 開途國間 또는 2개국 이상의 先進國間에 競合이 되는 경우에는 'first-come, first-served' 原則 適用
- 開途國의 必要性을 위하여 적절한 軌道位置와 周波數를 事前 確保하고, 수혜개도국이 이의 이용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 계속 유효
- 어느 지구정지궤도상의 위치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衛星發射 能力이 없는 개도국과 즉시 위성발사능력을 가진 다른 국가의 주장이 競合하는 경우에는 ITU 협정상의 效果性 原則(principle of effectiveness)에 따라 後者가 優先

---

13) Ibid.

14) UN.DOC. A/AC.105/C.2/L.200, 15 Mar. 1996.

상기 콜롬비아 Working Paper을 놓고 1993-1995년에 걸친 Working Group에서의 토의결과, ① 현재 지구정지궤도의 割當을 담당하고 있는 ITU의 활동영역과 관련 별도의 유엔 決議 必要性 문제 및 COPUOS가 동 문제를 토의할 權限(mandate)이 있는지 여부, ② paragraph 8의 "특별우선권(specific preferential rights)" 문제 ③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의 定義 문제, ④ 기존 ITU 규범 체제와의 兩立性 문제, ⑤ 지구정지궤도 사용과 관련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의 위험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콜롬비아로 하여금 이들 문제를 고려하여 금번 제35차 법률소위에 이들 主要爭點에 대한 書面 說明書를 添附토록 함에 따라 콜롬비아는 주요쟁점에 대한 解明과 1993년 시안에 수정을 가하여 금년 제35차 법률소위에 새로운 Working Paper를 제출하였다.

(2) 1996년 콜롬비아 Working Paper의 主要內容

우선 법률소위에서 제기된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COPUOS의 權限問題에 대한 콜롬비아의 檢討意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총회가 결의 50/27를 통하여 COPUOS로 하여금 地球停止軌道의 合理的이고 公平한 使用을 保障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을 계속 審議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地球停止軌道의 自然的·技術的 特性을 審議할 경우 開途國의 特別한 利益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므로 ① COPUOS와 그 소위원회가 ITU의 役割을 侵害하지 않으면서 지구정지위성궤도 문제를 다룰(examine and comment) 權能이 있고, ② 유엔총회는 지구정지궤도의 合理的이고 公平한 利用을 보장하는 방법들이 강구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③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④ 유엔총회가 法律小委에 제출된 콜롬비아의 제안이 이 문제에 대한 토의에 새로운 基礎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 문제가 COPUOS에서 논의되는데 瑕疵가 없다.

둘째, 國際電氣通信聯合(ITU)의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管轄問題에 대해 ITU헌장 제2장 제44조에서 地球停止軌道가 제한된 天然資源으로 合理的·效率的·經濟的으로 使用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 또는 국가군은 특히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고려하여 公平하게 地球停止軌道에 接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TU는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에 地球停止軌道 位置와 周波數를 配

分하고 있으나 ITU에 의해 규제(계획)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지구정지궤도 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規範體制가 필요하다.

콜롬비아는 이 세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여 ITU가 규제하고 있지 않는 地球停止軌道 位置 및 周波數 帶域이 'first-come, first-served'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開途國이나 地球停止軌道를 갖지 못한 國家에 不平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防止할 國際規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 Working Paper를 마련하였음을 설명하고, 1993년 Working Paper상의 권고(recommendation) 부분을 수정하여 다음 세가지를 유엔총회 決議로 採擇할 것을 제시하였다.

㈎ 地球停止衛星軌道에서 ITU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not planned) 주파수 및 서비스에 대해 電波干涉問題로 인해 國家間의 調整이 필요한 경우, 조정에 관계된 국가는 ① 地球停止衛星軌道에 대한 접근이 公平한 方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② 따라서 先進國과 開途國 사이 또는 이미 停止軌道를 갖고 있는 國家와 갖고 있지 못한 國家 사이에 同一軌道 또는 바로 근접한 궤도)를 놓고 競合할 경우, 선진국이나 이미 정지궤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개도국 또는 정지궤도 미보유국)가 요구하고 있는 軌道나 周波數에 접근할 수 있도록 最大한 모든 可能性을 提供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제한(restriction)을 최소화해야 한다.

㈏ 위의 경우 지구정지위성궤도 점유와 주파수의 사용에 대한 국가의 요구는 ITU 電波規則에 규정된 條件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地球停止衛星軌道의 效率的 使用保障을 위해 1994 Kyoto Conference 결의 18[1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성 "發射國家 (launching state)"는 지구정지위성궤도의 效果的·經濟的 使用을 위하여 위성이 수명이 다하기 바로직전에 宇宙廢棄物 (space debris) 또는 廢棄衛星을 지구정지궤도에서 處分軌道(disposal orbit)로 除去

15) ITV,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Kyoto, 1994, pp. 154-156; 지난 1994. 9.19.-10.14. 간 일본교토에서 개최된 ITV 제14차 전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 18: 위성망에 관한 ITV의 주파수 조정 및 계획체계의 검토'는 신규 ITV 회원국 및 개도국의 위성망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대를 반영, 주파수 및 지구정지궤도의 효율적 사용 및 효과적인 위성망 개발을 위하여 ITV 전파통신국장으로 하여금 기존의 ITV 절차 및 실행을 검토토록 하고 있다.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修正案에 대한 COPUOS 법률소위 討議 結果

상기 두개의 Working Paper에서 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지난 1976년 보고타선언을 통해 地球停止軌道에 대한 下部國家 管轄權을 주장하던 旣存의 立場을 크게 후퇴하여 지구정지궤도를 宇宙法上의 우주의 일부분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宇宙法 體制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規定이 없어 法的 空白을 招來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 지구정지궤도의 公平한 使用 原則을 구체화하여 開途國의 地球停止軌道 接近을 保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콜롬비아의 修正案은 지난 1993년 안의 토의에서 論亂이된 개도국을 위한 優先權 設定(preferential rights) 내용을 削除하여 先進國의 立場을 受容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Working Paper의 토의에서 미국은 地球停止軌道에 대한 사항은 ITU의 管轄範圍에 속하고 ITU 體制내에서 적절히 運營되고 있으므로 COPUOS를 통한 새로운 規範 體制 樹立에 反對하고 있으며 주요선진국이 이에 同調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콜롬비아의 Working Paper가 地球停止軌道에 대한 公平한 接近을 保障하고 法的 空白을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을 具體化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UN總會 決議案으로 提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콜롬비아의 제안은 consensus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내년도 課題로 남게되었다.

5. 宇宙利用 惠澤問題

가. 議題 採擇經過

1967년 宇宙條約은 第1條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영역(province of all mankind)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은 그 내용상 개도국을 念頭에 두고 있으며, 宇宙利用과 開發에 있어 국가간의 協力을 內包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외기권에서 국가간 協力의 內容 및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宇宙活動國의 具體的 義務가 무엇이며, 協力의 程度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國家의 協力은 義務的인가, 국가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운 規範體制의 수립이 필요한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宇宙條約 第1條에 의거, 先進國의 宇宙活動에 따른 惠澤을 그와 같은 혜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에도 提供하라는 要請이 계속 提起되었으나 더이상 선진국의 道德感情에 呼訴하는 것이 無意味해지자 개도국은 이 문제를 國際規範化를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宇宙條約 第1條의 履行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COPUOS와 그 法律小委에서 계속 제기되어 1988년 비로소 공식적으로 議題로 採擇되었으며, 우주조약 제1조의 解釋과 具體化를 통해 우주개발선진국으로부터 宇宙利用惠澤의 分配를 規範化하려는 개도국과 현행 우주활동 自由體制를 고수하려는 선진국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94년에야 비로소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13개 개도국의 유엔총회 決議案 草案이 제시되었고[16], 여기에 독일·프랑스안이 95년 提出되어 논의가 活性化 되었다[17].

그 결과 금번 96년 35차 법률소위에서는 브라질이 독일·프랑스안을 대폭 受容하는 融通性을 보이고 독일·프랑스 또한 자국 修正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는 두가지안을 제출한 전기 양측 대표간에 非公式 協議를 통해 두가지 안을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議長統合案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提議하여 의장안이 마련되었다. 여기서 금번 법률소위에서 토의된 宇宙利用惠澤의 國際協力 原則 확립문제에 대한 브라질안과 독일·프랑스안의 주요내용과 토의결과 만들어진 의장통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宇宙利用惠澤의 國際協力 原則에 관한 開途國, 先進國 및 議長案 主要內容

(1) 브라질 共同案(수정안)의 主要內容[18]

브라질 수정안은 前文과 10個項으로 된 本文(부속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

16) UN.DOC. A/AC.105/C.2/L.182 ; 이 초안은 95-96년에 걸쳐 1차 및 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음.

17) UN.DOC. A/AC.105/C.2/L.197, 27 Mar. 1995.

18) UN.COS, A/AC.105/C.2/L.182/Rev.3, 22 Mar. 1996.

전문에서는 유엔憲章, 1967 宇宙條約, 宇宙活動에 관한 UN총회 決議 및 勸告를 상기시키고, 宇宙의 利用과 開發이 개도국의 必要를 특별히 고려하여 그 經濟的 科學的 發展段階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利益이 되고 惠澤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原則을 强調하고 있으며, 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題目을 "우주의 개발과 이용은 개도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혜택과 이익이 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측면 선언"으로 하고 있다.

둘째, 본문 제1, 2항에서 宇宙條約 規定에 따라 宇宙의 開發과 利用이 국가의 經濟發展 段階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利益과 惠澤이 되도록 하고, 모든 人類의 領域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國際協力은 유엔憲章, 우주조약을 포함한 國際法에 따라 遂行되며,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社會·經濟·科學·技術發展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국가에 利益과 惠澤이 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제3항에서 宇宙開發能力 保有國家의 國際協力 增進을 강조하고 제4항에서 독일·프랑스안이 강조하고 있는 國際協力 문제의 모든 側面에 대한 國家의 自由決定權을 기술하고 있다.

넷째, 제5항에서 국제협력의 目標로 ① 宇宙科學·技術의 發展·應用의 增進 ② 국가의 宇宙開發能力 向上 ③ 국가간에 專門知識·技術交換 促進 ④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들고, 제6항에서 國際協力方式은 정부간·비정부간, 상업적·비상업적, 세계적·지역적·양자적 방법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公平·合理·相互受容의 기초아래 우주개발 선진국의 국제협력을 통해 그 惠澤이 개도국과 우주개발 후발국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다섯째, 제7항에서 現在와 未來世代의 지속적인 利用과 開發을 위해 모든 국가의 宇宙環境保護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여섯째,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제8항에서 국가·국제기관·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업무이용(협조)을 강조하고, 제9항과 10항에서 COPUOS의 役割强化와 모든 국가로 하여금 能力에 따라 우주이용과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에 參與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브라질안은 지난 1995년안의 내용중에서 前文을 修正하고 實質的인 규정인 본문(부속서)에서 협력사업 제공조건의 最惠國待遇 部分, 物資·裝備의 交換 및 技術移轉, 宇宙利用 科學·技術에서 나오는 派生的 利益(spin-off benefits)의 公正한 再分配 부분을 削除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 제안국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써 개도국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된 1995년안을 수정하고 독일·프랑스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종적인 consensus를 導出해내고자 하는 意志의 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2) 독일·프랑스 修正案의 主要內容[19]

지난 95년안에 없었던 前文部分을 追加하여, 개도국의 特別利益을 고려한 國際協力 原則, 宇宙의 平和的 利用을 위한 協力原則의 중요성 증가, 기존 國際協力 事業에서 획득한 經驗 및 1982년 UNISPACE II의 勸告內容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문(부속서)은 국제협력의 一般原則, 協力의 形態, 協力의 範圍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국제협력의 一般要素 부분에서는, ① 우주의 평화적 이용·개발에 관한 協力은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에 따라 개도국의 특별한 이익(필요)을 고려하여 사회·경제·과학·기술 발전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惠澤과 利益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② 國際協力은 개도국의 特別한 利益을 고려하여 우주과학·기술·응용발전을 촉진하고 財政·技術的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③ 각 국가는 衡平과 互惠를 기초로 우주의 利用·開發에 관한 協力問題를 自由롭게 결정할 수 있고, 협력사업의 契約條件은 公正하고 合理的이어야 하며 관련국가의 正當한 權利 및 利益(예를 들어 지적재산권과 같은)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協力의 方式 (modes of cooperation)으로 ① 국가는 다양한 協力의 形態 즉 정부간 비정부 간 협력,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간, 선진국간 협력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또한 비상업적 또는 상업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② 국가는 效率的으로 財政·技術資源을 配分하기 위해 모든 對案중에서 가장 效果的이고 적절한 協力方式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③ 국제협력은 국내적·국제적 宇宙活動의

16) UN.DOC. A/AC.105/C 2/L.197/Rev.1, 19 Mar. 1996.

一貫性을 통해 지속·균형·보충적인 방법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의 經驗과 知識을 共有하게 됨으로써 협력이 강화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져 각 국가는 互惠的인 惠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協力의 領域 (areas of cooperation)으로 ① 國際法과 유엔憲章 및 外氣圈條約에 따라 이루어진 활동은 동 부속서 Ⅰ·Ⅱ의 국제협력으로 간주되며, (a) 지구환경감시, 자연·농업자원관리, 해양·기상관측, 재난예방과 같은 원격탐사, (b) 이동통신·항해·교육 뿐만 아니라 통신 infrastructure를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사용, (c) 중력연구 및 생명과학, (d) 유인·무인 우주탐사 등의 분야를 예로 들 수 있으며, ② 선진국·개도국의 開發援助機構 뿐만 아니라 國家·國際機關, 硏究所는 특히 우주활동 결과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주service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③ COPUOS는 국내·국제적 宇宙利用·探査活動 분야에서 국내·국제적 활동에 관한 情報交換 場所(forum)로서의 役割을 强化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프랑스안의 특징은 國際協力의 形態(mode)와 分野(area)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 형태와 분야에서 國家의 自由를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주개발 선진국의 입장인 宇宙利用·開發의 自由原則을 반영하고 있다.

(3) 討議結課 : 議長統合案[20]

(가) 議長統合案 提出 背景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브라질 修正案과 독일·프랑스 修正案은 國際協力의 形態, 分野 등에서 지난 95년안보다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주이용·개발의 혜택에 관한 國際協力 問題에 대한 브라질안과 독일·프랑스안의 수정의견 제시는 基本的으로 이 문제에 대한 consensus를 통하여 구체적인 成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위원국들의 努力의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이며, 非公式協議를 통해 하나의 의장안으로 統合하여 토의하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意見에 따라 의장안이 제출되었다.

(나) 主要 爭點事項

의장통합안은 상기 브라질안과 독일·프랑스안에서 共通되는 부분과 異見이 있는 부분을 區分하여 의견 對立部分을 괄호로 묶는 방식으로 제출되었

20) UN.DOC. A/AC.105/C.2/L.202, 27 Mar. 1996.

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총회결의 초안의 제목(title), 협력의 형태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시하는 문제, 우주환경보호 내용 삽입문제 세가지 부분이다. 토의에서 제목(title) 문제는 브라질 등 개도국측에서 독일·프랑스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知的財産權 문제를 우주활동 國際協力 분야에서 국가의 正當한 權利로 例示하느냐 여부와 우주환경 보호문제를 삽입하느냐 여부를 놓고 독일·프랑스등 선진국측과 개도국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consensus를 形成하지 못하고 토의를 종결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기존의 宇宙法體系가 그 골격(framework)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施行하기 위한 實行規範이 미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國家가 共感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우주활동 분야중 宇宙開發·利用에 따른 惠澤 문제는 1967 우주조약 제1조의 國際的 履行과 관련된 문제로서 宇宙活動 自由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과 우주활동에 따른 혜택문제에 대해 開途國에 대한 特別한 考慮를 주장하는 입장이 尖銳하게 대립하고 있다. 셋째, 우주활동 最大强國인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消極的이며 현행 체제를 固守하려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대표는 현행법체제하에서 兩者·多者間 協力의 形態로 다양한 우주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유엔總會 決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6. 其他問題

가. 宇宙廢棄物 問題(space debris)

宇宙廢棄物 문제는 아직까지 COPUOS 법률소위의 公式議題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議題問題 토의시 지속적으로 提起되고 있는 문제이다. 금번 제35차 법률소위에서도 체코대표가 '우주폐기물에 적용 가능한 현행우주법 규범'의 문제를 새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칠레대표는 '우주폐기물의 법적 문제'를 의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國際法協會(ILA)는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協約 草案을 제시한 바 있다.[21]

---

21) 이 협약 초안은 1995년 제38차 COPUOS 총회시 ILA 대표연설에 첨부되어 제출됨.

이에 대해 미국대표 등 主要先進國의 입장은 宇宙廢棄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COPUOS 법률소위에서 토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아직까지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의 實體, 危險性에 대한 구체적인 分析資料가 확보된 바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즉 法的 問題가 토의되기 전에 科學·技術的 問題가 先決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는 宇宙廢棄物 問題는 충돌위험, 우주 환경문제, 우주에서의 핵원료물질 사용원칙의 사용문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의제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宇宙廢棄物로 인한 被害發生時 國際責任問題, 우주폐기물의 除去問題 등이 제기될 것이므로 이는 개도국 보다도 궁극적으로 우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主要先進國의 責任問題로 歸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壽命이 얼마남지 않은 중국의 동방홍위성이 무궁화 1호 위성궤도로 이동해 와 衝突 및 電波妨害 問題를 惹起한 사실이 있는 만큼 우주폐기물 문제에 대한 科學·技術的 硏究調査와 더불어 조만간 그 法的 解決策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宇宙活動의 商業的 側面에 대한 檢討

이 문제는 미국이 COPUOS 법률소위에서 새로운 議題로 採擇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다. 이제까지의 宇宙活動이 주요선진국의 軍事·科學的 目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放送·通信 등의 분야에서는 商業的 活動을 目的으로 한 活動이 이미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기권에서의 新物質 生産, 醫藥品 開發 등 經濟的 側面에서의 活動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知的財産權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具體的 規範體制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Ⅲ. 向後 展望과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COPUOS에서 宇宙法과 관련된 하나의 의제가 채택되어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는 再論할 여지가 없다. COPUOS의 主要議題들이 쉽게 解決되지 못하는 原因은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國際社會 構造問題를 들 수 있다. 즉 宇宙法 問題를 둘러싼 國際社

會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經濟發展 程度·科學技術 水準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이다. 다시말해 經濟的으로나 科學技術 水準으로 볼때 이미 우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은 宇宙의 自由利用體制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자국의 宇宙活動이 國際規範을 통해 제약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經濟的·技術的 能力面에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늦게 宇宙活動에 뛰어든 開途國은 기존의 宇宙法 規範을 구체화함으로써 先進國이 확보한 技術과 經驗의 獲得을 통해 우주활동 參與機會를 確保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소위 의제 5, 우주이용혜택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본 바와 같이 先進國은 自由利用體制下에서 공정과 상호이익, 즉 經濟的 原則에 입각한 國際協力을 강조하고, 개도국은 宇宙條約 제1조 규정을 들어 開途國에 대한 特別한 立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宇宙法 創出過程의 중심무대인 COPUOS 자체의 意思決定 方法, 즉 consensus방식에 문제가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PUOS에서 어떤 法的 問題가 議題로 採擇되기 위해서는 유엔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하며 이것이 다시 COPUOS에서 토의과정을 거쳐 각국간에 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國際社會가 비록 유엔이라는 기구내에서 人類共同의 繁榮과 利益을 위한다는 名分을 통해 活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국의 중대한 利益을 讓步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討議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는 自國利益의 立場에서 문제를 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비록 宇宙活動 分野에서 情報를 交換하는 등의 협력문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일지라도 그 이상의 진전, 즉 이를 規範化 함으로써 具體的인 法的義務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consensus가 형성되기 어렵다.

세번째, 宇宙의 開發과 利用에 관한 諸問題의 規範化에 대한 宇宙活動 先進國의 消極的 태도가 COPUOS 논의를 통한 具體的 結果 산출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영국 등의 선진국은 宇宙活用 惠澤에 관한 國際協力 問題, 地球停止軌道 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現行法體制內에서 별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國際協力의 强化問題는 規範化를 통해서 보다는 국가간의 自由利用原則에 입각한 政策的 協力 차원에서 解決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宇宙活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規範化 함으로써 지게될 法的義務로부터의 拘束을 피하면서 自國의 自律性을 최대

한 確保하려는 입장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地球停止軌道에 관한 콜롬비아의 Working paper가 갖고 있는 合理性에도 불구하고 主要先進國이 선뜻 이를 받아들이려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規範化에 의한 法的 拘束의 부담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이 COPUOS에서 논의되고 宇宙法에 관련된 主要議題가 유엔總會 결의내지 國際條約化하는데 障碍가 되고 있지만 우주의 開發과 利用의 진전과 더불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COPUOS내에서 解決해야할 國際的 課題이며, 그것이 어떤 형식(국제조약 또는 총회결의)으로든 規範化되지 않으면 안될 사안들이다.

여기서 이제 막 宇宙活動의 무대에 뛰어든 우리나라가 이들 諸問題에 대한 立場을 어떻게 정립,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유엔가입 이후 지난 94년 COPUOS의 위원국이 되었으나 COPUOS에서 논의되고 있는 主要法的 問題 討議過程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섣불리 開途國이나 先進國의 어느 한 立場에서 우리나라의 方向을 設定하기도 困難한 실정이다. 금번 35차 법률소위에서 브라질안과 독일·프랑스안에 대한 統合案을 작성할 것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우리의 立場을 勘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향후 우주법의 發展과 規範創設 過程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方向을 다음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宇宙活動의 積極的 展開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法律專門家의 養成이 요구된다. 금번 제35차 법률소위에서 브라질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국 대표의 대부분이 宇宙法에 관한 非專門家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問題가 토의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各國 代表가 각기 自己立場만 나열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宇宙利用과 開發에 관한 主要問題에 대한 調整者 役割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國家主權에 입각해 國家自由를 최대한 確保하려는 선진국 입장과 宇宙는 人類의 共同遺産이며 그 이용에 따른 惠澤은 모든 국가에게 公平하게 돌아가야한다는 開途國의 立場을 절충하고 調整하는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OPUOS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法的·科學的으로 分析하고 學界 등의 意見 收斂을 통해 유엔總會 決議 草案 및 協約草案 作成 과정

에서 主導的 役割을 할 必要性이 있다. 향후 21세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宇宙活動에 參與하게 될 전망이며, 이럴 경우 필연적으로 COPUOS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宇宙活動을 規律할 規範體制의 整備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宇宙活動 관련 規範定立 過程에 적극 參與하는 것이 우리의 國益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學界와 政府 各部處間의 有機的이고 體系的인 硏究와 協助體制가 필요하다 하겠다.